

「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시가 시행하는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자격자에게 경비부과의 근거와 기준 등을 규정한 존치목적이 상실되어 「구미시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」의 폐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0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농촌근대화촉진법」 제100조에 의거하여 농지개발사업 수혜자에게 사업 비용 부과를 위해 제정되었으나, 1995.12.19. 「농촌근대화촉진법」이 폐지됨에 따라 「구미시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되어 「구미시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」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